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5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2.

발 의 자 : 이헌승 · 송석준 · 엄태영
김석기 · 김상훈 · 박성훈
김도읍 · 윤상현 · 한지아
서범수 · 곽규택 · 이양수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도급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 권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,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산업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,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

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1항).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”를 “구성·운영하여야 하며,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각각 대표하는 사용자위원,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각각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)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<u>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u>	제24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성·운영하여야 하며,</u> <u>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각각 대표하는 사용자위원,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각각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</u>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